장애인 생활안정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재정적 지원과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장애수당 및 연금제도,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한 자립자금대여, 주거지원 및 세금 감면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공공시설 요금의 교통, 통신비 감면 등의 다양한 재정혜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1
1.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4
1.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4
1.1.1. 장애인의 개념 4
1.1.2. 장애인등록 8
1.1.3.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10
2. 수당 및 연금지원 14
2.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14
2.1.1. 장애수당 14
2.1.2. 장애아동수당 15
2.2. 장애(인)연금 18
2.2.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18
2.2.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21
3.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24
3.1. 자립자금 지원 24
3.1.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4
3.2. 주거지원 25
3.2.1.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25
3.2.2. 주거 편의지원 27
4.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29
4.1. 세금감면 29
4.1.1. 소득세 감면 29
4.1.2.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30
4.1.3.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32
4.1.4.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35
4.2. 공공요금 감면 36
4.2.1. 공공시설 요금 감면 37
4.2.2.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38
5.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40
5.1. 교통요금 감면 40
5.1.1. 공공 교통요금 감면 40
5.1.2.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41
5.2.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42
5.2.1. 통신요금 감면 42
5.2.2. TV 수신료 면제 44

1.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1.1.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1.1.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肢體障碍人)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視覺障碍人)	①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聽覺障碍人)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精神障碍人)	다음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①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②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따른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6	췌장장애인 (膵臟障碍人)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장애인의 장애는 그 정도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 소개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주거 편의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득세 감면 ▪ 상속세 감면 ▪ 증여세 면제 ▪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요금 및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 여객운임 감면 ▪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 그 밖에 장애인 편의지원, 장애인 고용 및 교육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장애인 고용
▪ 이동 편의 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
장애인 취업·창업	**장애인 교육**
▪ 장애인 개념 및 등록 ▪ 장애인 취업 ▪ 장애인 창업	▪ 장애인 일반교육 ▪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 특수교육

1.1.2.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6. 발행) p.74].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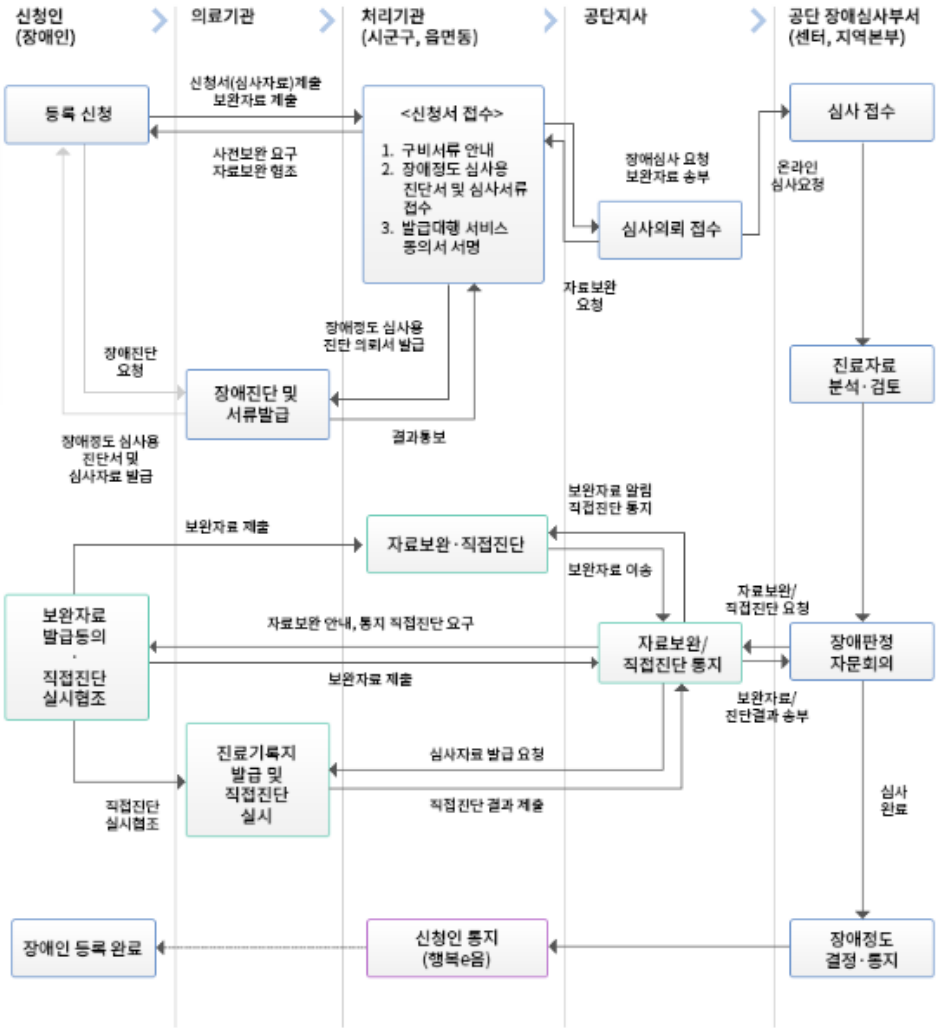
※ 다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인등록 절차도

▪ 장애인등록 신청, 진단 및 심사 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정책-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 정도의 확인과 장애인 등록

▪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정도심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장애인등록 취소

장애인등록의 취소

▪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회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제2항제1호·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 사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애인이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누구든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의3).

1.1.3.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시장 등은 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 경우 시장 등은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음]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장애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등록증의 결제 및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함)
-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기존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제외]

> **※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
> • 시장 등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사진 1장을 제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 제외)받아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모바일 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 등록증 발급

▪ 시장 등은 위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본문).

▪ 위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및 제4항).

▪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

▪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위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 본문).

※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 단서).

※ 장애인등록증 양도 등의 금지

-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4항).
- 또한,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2호의2).

※ 그 밖에 장애인등록증의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본문).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 정도의 조정

▪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등록증 및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모바일 등록증 회수

장애인등록증 반환

▪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및 제1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다만,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모바일 등록증 전자적 회수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모바일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발급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된 장애인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이 만료된 경우

2. 수당 및 연금지원

2.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1.1.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189).

	내 용	비 고
연령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0~p.192).

구 분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만 적용),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3).

구 분	대 상 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장애수당의 환수

▪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87~2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

▪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229~p.230).

	내 용
연령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31).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등의 지급계좌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31~p.232).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므로, 장애아동수당 책정 시 "차상위장애인"으로 자격 책정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의 경우 퇴소 시 재가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가 시설 입소 시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계속 지급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 전환**
>
> ·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경우(18세 여부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며,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장애(인)연금

2.2.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과 비교
>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지급대상자

▪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5).

	내 용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된 중증장애인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

지급요건

▪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p.14).

	내 용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1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서면·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의2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항).

※ 그 밖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와 안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18~64세)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18세에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

▹ 기초급여액(2026. 1월~ 2026. 12월 기준)은 349,700원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제6항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3조).

※ 기초급여액의 산정방법 및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의 급여기준에 대한 사항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p.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

▹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39,70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26. 1월~ 2026. 12월 기준).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9만원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0원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8만원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3만원	5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 및 제67조제1항).

	요 건
연 령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국민연금 가입기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에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면 완치된 날과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2).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 정도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중증·경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 밖에 장애등급의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 장애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8조).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

※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장애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장애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 국민연금 장애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3.1. 자립자금 지원

3.1.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자금대여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455~456].

-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6].

대여의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2).

	2026년 대상자 선정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282,119원 초과 2,564,238원 이하	2,099,646원 초과 4,199,292원 이하	2,679,518원 초과 5,359,036원 이하	3,247,369원 초과 6,494,738원 이하	3,778,360원 초과 7,556,719원 이하	4,277,976원 초과 8,555,952원 이하	4,757,575원 초과 9,515,15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79,599원씩 최대값은 959,198원씩 증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가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금융상품-생활안정자금-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참조).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다만, 미소금융 이용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이용 가능합니다.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한도액, 이율 및 융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3).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 '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 3.0%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 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2%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기존 보증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제20조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여 시행 중지 (무보증 및 담보대출만 시행)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4).

대여 신청 및 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 ※ 그 밖에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여조건과 대여제한, 대여기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2~4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주거지원

3.2.1.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 **※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
> ·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장애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특례

▪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인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인 공급신청자가 1순위의 입주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바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비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만 해당)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나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입주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별도공급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별도공급

▪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54조제1항).

※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3.2.2. 주거 편의지원

주택개조비용 지원

장애인에 대한 집 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또는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주택개조비용 지원 대상자

▪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함)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4조).

신청인	요 건
장애인	▪ 장애인이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함 ▪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해야 함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주택(임대용 주택 포함)을 개조해야 함

▪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장애인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제3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4.1. 세금감면

4.1.1.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인적요건 ('거주자 부양가족' 의 범위)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소득세 공제신청

▪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본문).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소득공제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된 때에는 이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애인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과세기간별 최대 1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전단).

4.1.2.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상속세 감면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 공제금액 계산방법

·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19조).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자녀(태아 포함)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인 경우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3항).

※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직계존비속"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상속세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후단).

증여세 면제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이하 “자익신탁”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68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 ①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②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③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
> ·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③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4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장애인은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5항 및 제68조제1항).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1.3.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

·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본문).

면제신청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세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본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의 사유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세대를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 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용도변경 시 개별소비세 징수

▪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1)).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감면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②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을 말합니다.

▪ 대체취득(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항).

면제신청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소정의 신청서식(지방자치단체 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

>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바항).
>
>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및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만 해당됩니다.

4.1.4. 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함)

다. 인공후두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면제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및 별표 2).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4.2. 공공요금 감면

4.2.1.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8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시설	감면율	근거규정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의 입장료 (공립수목원 제외)	전액 면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전액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미술관 관람료	전액 면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제5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전액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5호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2.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제48조제6항].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자
할인금액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 각 1부를 구비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538면].

▪ 장애인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의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합니다[「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약관) 제48조제6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 참조].

		계	도매	소매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	64,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월~11월)	9,900원	7,9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경감 직접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찾아서 가스공사가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통해 대신 신청해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 참조]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 구성으로 경감 가능.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로 확인

※ 장애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에너지바우처 제도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5.1. 교통요금 감면

5.1.1. 공공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시설의 종류		감면율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감면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 교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8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2~63].

- 대한항공(문의처 : 1588-2001)

조건	할인율	증빙서류
▸ 1~4급 장애인 ▸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 ▸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 및 동반 보호자 1명	50%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 5~6급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아시아나 항공(문의처 : 1588-8000)

대상	조건	정상운임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 장애인 (성인/소아/유아)	중증(혹은1~3급) 복지카드 소지자	50%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공항 이용료 50% 할인
	경증(혹은 4~6급) 복지카드 소지자	30%		
▸ 장애인동반자	중증(혹은 1~3급) 승객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50%		

▪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항공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 ※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않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1588-2001) 또는 아시아나항공(1588-8000) 등 해당 항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 연안여객선 요금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여객선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2.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차량에 한정하여 통행료가 감면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및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단서).

-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여 과태료·벌금·구류·과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4].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장애인 차량은 다음의 방법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구 분	할 인 방 법
고속도로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차로	■ 지문인증방식: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다만,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해야 함 ■ 통합복지카드방식: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64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통신료 및 TV수신료 감면

5.2.1.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 번호안내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 인터넷전화 서비스
- 휴대인터넷 서비스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및 아동 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0~p.61].

구 분	지 원 내 용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다만,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및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 다만,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정):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다만,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통신요금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장애인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본인인증 후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통신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통신요금 감면신청 구비서류**
>
>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고유번호증(사본)
>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의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장애인 통신요금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업자(KT, SK, LG U+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2.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61].

> ※ 장애인 TV수신료 면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는 지역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